

# 국 토 교 통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 관련 법령 개정사항 안내

1. 우리부는 소형 타워크레인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20. 7. 1. 시행)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2. 이에 법령 개정내용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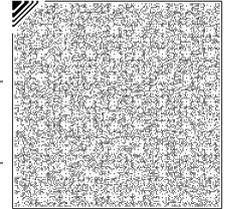
가.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 관련 법령 개정내용(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부칙)

○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의 세부 규격

- 2020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된 타워크레인

구 분	타워형(T형)	러핑형(L형)							
정격하중	3톤 미만								
지브 최대길이	50m 이하	35m 이하							
지브 최대 모멘트	686kN·m 이하 ※ 지브 최대 모멘트는 지브의 모든 부분에서 최대 모멘트 값 이하여야 하며, 다음 표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5px;">                     지브 최대 모멘트 (kN·m)                 </td> <td style="padding: 5px;">                     =                 </td> <td style="padding: 5px;">                     타워크레인 중심부에서 후크의 중심부까지의 수평거리 (m)                 </td> <td style="padding: 5px;">                     ×                 </td> <td style="padding: 5px;">                     인양 가능한 최대하중(톤)                 </td> <td style="padding: 5px;">                     ×                 </td> <td style="padding: 5px;">                     중력 가속도 (9.8m/s<sup>2</sup>)                 </td> </tr> </table>		지브 최대 모멘트 (kN·m)	=	타워크레인 중심부에서 후크의 중심부까지의 수평거리 (m)	×	인양 가능한 최대하중(톤)	×	중력 가속도 (9.8m/s <sup>2</sup> )
지브 최대 모멘트 (kN·m)	=	타워크레인 중심부에서 후크의 중심부까지의 수평거리 (m)	×	인양 가능한 최대하중(톤)	×	중력 가속도 (9.8m/s <sup>2</sup> )			
설치 높이	지상 15층 이하 건축물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높이								

- 2020년 7월 1일 이후에 등록되는 타워크레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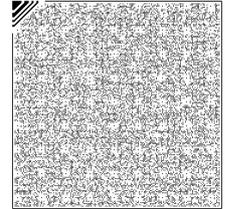


구 분	타워형(T형)	러핑형(L형)
정격하중	3톤 미만	
지브 최대길이	40m 이하	30m 이하
지브 최대 모멘트	588kN·m 이하	
설치 높이	지상 10층 이하 건축물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높이	

- 세부 규격에 적합한 타워크레인은 조종사 등이 세부 규격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마스트 1단에 정격하중, 지브 최대길이 및 지브 최대 모멘트가 기재된 안내판 부착
- '20. 6. 30. 이전에 등록된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은 '21. 6. 30까지 개정 규정에 따른 세부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

나. 관련 사항

- '20. 6. 30. 이전에 등록된 소형 타워크레인은 유예기간('21. 6. 30.)내에 새로 정해진 규격에 맞도록 조정하거나 일반 장비로 전환할 수 있으며(정격하중 조정, 조종석 부착 등). 이 경우 검사기관의 구조변경검사 등을 통해 안전성과 품질에 관한 검증을 거쳐야 함
  - 소형 세부 규격에 적합한 타워크레인은 안내판 부착
- '20. 6. 30. 이전에 등록된 소형 타워크레인 중에서 새로 정해진 세부 규격에 맞지 않는 장비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건설기계관리법령에 따른 관리(각종검사, 조사 등)가 강화될 예정.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원격조종 타워크레인협회장,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

주무관 김태균 공업사무관 임종채 건설산업과장 전결 2020. 7. 16. 최입락

협조자

시행 건설산업과-5480 (2020. 7. 16.) 접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정부세종청사 6동 341호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3543 팩스번호 044-201-5547 / [tg1313@molit.go.kr](mailto:tg1313@molit.go.kr) / 비공개(5)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